

제 호

긴급항공기 지정서

- 상호(법인명):
- 성명(대표자):
-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:
- 주소(소재지):
- 항공기 등록부호:
- 항공기 형식:
- 항공기 제작일련번호:
- 긴급한 업무의 종류:
- 비고:

위 항공기를 「항공안전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지 방 항공 청 장 직인

주의사항

- 지정된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언제나 이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해야 합니다.
- 이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207조제6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- 이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「항공안전법」 제6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